

「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육성대상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신설(안 제6조)

가. 개정 이유

- 지식재산 기본법이 개정(공포 2022. 6. 10, 시행 2022. 12. 11.)됨에 따라, 「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」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육성대상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신설(안 제26조)
 -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, 진흥·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요건을 규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지식재산 연구기관,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